

2018년 04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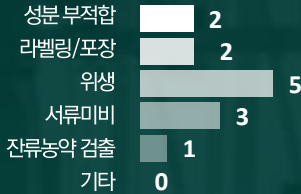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III.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1.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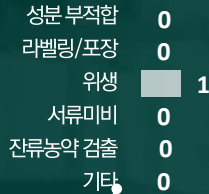
미국

한국산 13건 (17년도 211건)



일본

한국산 1건 (17년도 19건)



중국

한국산 0건 (17년도 37건)

호주

한국산 0건 (17년도 6건)

EU

한국산 0건 (17년도 10건)

러시아

한국산 0건 (17년도 1건)

대만

한국산 0건 (17년도 3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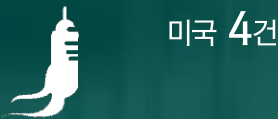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주요 제품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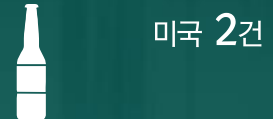
어류 / 총 6건



인삼류 / 총 4건



음료류 / 총 2건



과실견과류 / 총 1건



소스류 / 총 1건



캐나다의 경우, 2018년 4월 통관거부 사례가 홈페이지에 미게재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미국 4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3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미국	4월	멸치	수산물	어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제조	-
미국	4월	멸치	수산물	어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제조	-
미국	4월	멸치	수산물	어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제조	-
미국	4월	인삼음료	농산물	인삼류	라벨링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
미국	4월	인삼음료	농산물	인삼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포장 또는 보관	-
미국	4월	인삼음료	농산물	인삼류	위생	비위생 환경에서 포장 또는 보관	-
미국	4월	인삼음료	농산물	인삼류	라벨링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
미국	4월	비 탄산 청량 음료	농산물	음료	서류	입증 서류 미제출	-
미국	4월	비 탄산 청량 음료	농산물	음료	서류	입증 서류 미제출	-
미국	4월	말린 감	임산물	과실·견과류	잔류농약	잔류농약 검출	-
미국	4월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수산물	어류	성분	살모넬라균 검출	-
미국	4월	브레그마세로티대과 · 유클리티대과 · 가디대과	수산물	어류	성분	리스테리아균 검출	-
미국	4월	소스	농산물	소오스류	서류	입증 서류 미제출	-

일본 4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일본	4월	냉동 은비늘치	수산물	어류	위생	대장균 검출	폐기 또는 반송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 Case.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비위생 문제로 통관 거부

2018년 4월, 한국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멸치를 수출하였으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또는 포장되어 총 3건의 통관 거부가 발생함.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Section 801(a)에 따르면,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품 생산, 포장, 보관 및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 방법, 시설은 제조품질기준(GMP)에 대한 법률인 Section 360(f)의 요건을 따라야 함. 수산물 이외에도 한국의 인삼음료 수출업체 역시 같은 사유로 2건이 통관 거부되었음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801(a)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Case.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유해물질 성분 검출되어 통관 거부



2018년 4월, 한국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2건이 통관 거부되었음. 통관 거부된 사유는 독성 물질인 리스테리아균(Listeria)과 살모넬라균(Salmonella)이 검출되었음.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은 패혈증, 수막염, 식중독 등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독성 물질임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에 의거, 독성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에 따라 미국 식약처(FDA)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402(a)(1)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 Case. 한국 음료 수출업체, 서류 미비로 통관 거부

2018년 4월, 한국의 음료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비탄산의 청량 음료를 수출 하였으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Section 801(a)(3)에 의거, 통관 거부 대상이 되어 승인이 거절되었음. 해당 제품은 CFR Part 108에 의하면, 제조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정 계획을 제출해야 함. 또한, 보건 위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그러나 한국 업체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미국 식약처(FDA)는 해당 제품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거부한 것임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801(a)(3)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 미국, CFR Part 108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r/CFRSearch.cfm?CFRPart=108&showFR=1>

일본 Case.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대장균균 양성 반응나와 통관 거부



2018년 4월,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는 일본으로 냉동 은비늘치를 수출하였으나,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균에 양성 반응이 나와 통관 거부되었음. 대장균에 감염될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법에 따르면, 냉동산 선어류의 경우, 세균수는 100,000/g 이하, 대장균균에는 음성 반응, 식중독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균인 장염 비브리오는 100이하 /MPN를 충족시켜야 함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법

<http://www.mhlw.go.jp/shingi/2006/05/dl/s0522-5g.pdf>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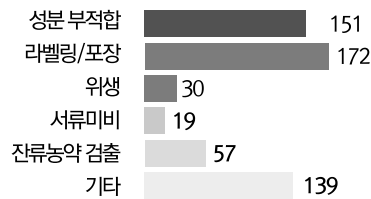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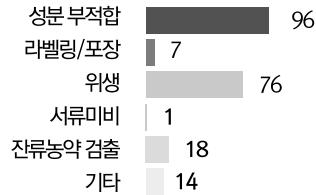
미국

총 56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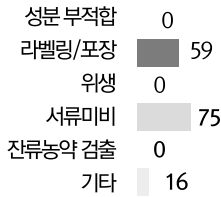
EU

총 2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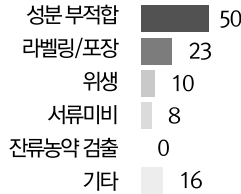
러시아

총 15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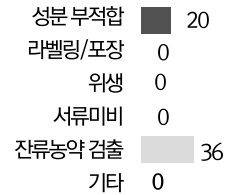
중국

총 107건



대만

총 56건



일본

총 46건



호주

총 31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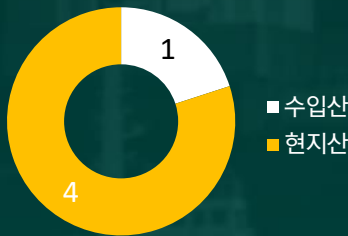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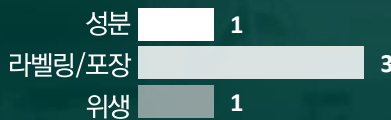
한국산 0건 / 총 5건

2018년 4월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¹⁾ 건수는 총 5건으로 현지산 4건, 수입산 1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이집트에서 발생한 것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으로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하였고, 2위는 성분과 위생이 각각 1건씩 집계되었음. 성분의 경우, A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식품에 포함되었고, 위생은 식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됨. 제품으로는 코코아류와 과실류가 각각 2건, 가금육류가 1건으로 나타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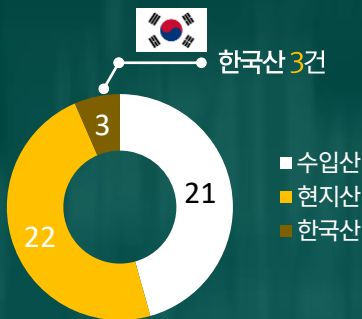


캐나다

한국산 3건 / 총 46건

2018년 4월 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6건으로 수입산 21건, 현지산 22건, 한국산 3건인 것으로 조사됨. 한국산 제품 모두 라벨링에 달걀에 대하여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한 사유로 리콜되었음. 그 중 2건은 어류이며, 나머지 1건은 갑각류였음.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으로 30건 중 15건이 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이외 대장균 또는 금속,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음. 수입국가 중 미국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이 리콜되었으며, 제품별로는 포유 가축 육류가 13건, 채소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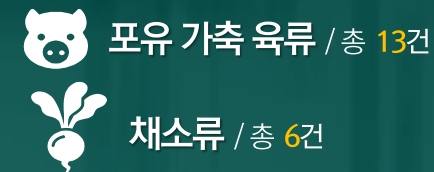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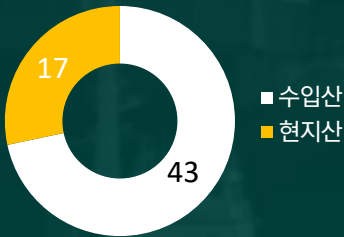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EU** 한국산 0건 / 총 60건

2018년 4월 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0건으로 수입산 43건, 현지산 17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칠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금속,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됨. 2위는 성분 부적합으로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첨가물이 검출됨. 리콜 제품은 기타 조제 농산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낙농품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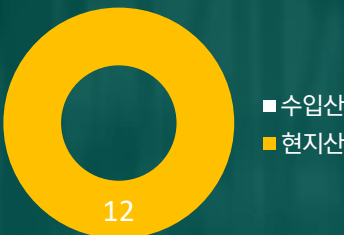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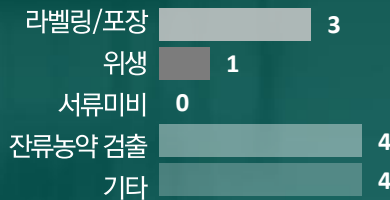
 **일본** 한국산 0건 / 총 12건

2018년 4월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2건으로 12건 모두 일본 현지산인 것으로 조사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잔류농약 검출과 기타 문제로 각각 4건씩 집계되었음. 잔류농약 검출의 경우, 제품 모두 보리 가공품으로 아조록시스트로빈 등 농약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기타 사유 대부분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여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한 경우임. 제품별로는 곡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포유 가축 육류, 어류, 기타 육류, 연체 동물 등 다양한 품목이 1건씩 리콜 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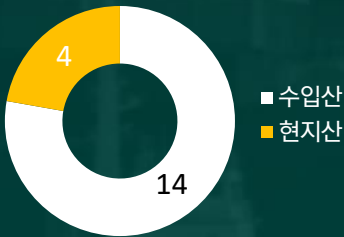


필리핀

한국산 0건 / 총 18건

2018년 4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8건으로 수입산 14건, 현지산 4건으로, 4월에는 한국산이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태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대만에서 각각 4건의 리콜이 발생함. 리콜 사유 1위는 기타로 18건 모두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였음. 제품별로는 기타 조제 농산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식품 보조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외 과자류 4건, 커피류 2건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18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10건

과자류 / 총 4건

커피류 / 총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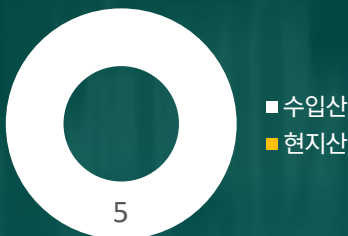


홍콩

한국산 0건 / 총 5건

2018년 4월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수입산으로 한국산은 집계되지 않았음. 수입산 중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2건을, 캐나다는 1건을 차지하였음. 리콜 사유 1위는 모두 위생 문제로 식품에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이물질이 발견되었음. 제품별로는 치즈를 포함한 낙농품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육류, 주류, 난류가 각각 1건씩 조사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5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낙농품 / 총 2건

기타 육류 / 총 1건

주류 / 총 1건

난류 / 총 1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1건

2018년 4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건으로 벨기에산 맥주인 것으로 확인됨. 해당 제품이 리콜된 사유는 위생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였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수입산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1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주류 / 총 1건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미국 : 미국 FDA, 식품 제조업체들을 위해 라벨링 관련 영양 정보 개정 기간 연장

미국 FDA는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양 정보 라벨링 개정안 적용 기한을 2018년 6월 26일에서 2020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였다고 발표함. FDA는 식품 제조업체가 영양 정보를 수정할 시간을 고려하여 약 18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라벨 변경 관련 가이드 지침을 제공할 계획임

▷ 관련 링크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606520.htm>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10/02/2017-21019/food-labeling-revision-of-the-nutrition-and-supplement-facts-labels-and-serving-sizes-of-foods-that>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83492.pdf>

미국 : 미국 상원, 주(州)별 축산물 검역 인증 상호 인정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은 주(州)정부별로 시행되는 축산물 검역 인증에 대해 다른 주와의 상호 인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함. 주 정부의 축산 검역 기준은 식품위생검역국(FSIS)의 지침 아래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정부 기준보다 까다롭게 관리되어 왔음. 타 지역과의 축산물 검역 인증이 되지 않아, 오히려 수입 축산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관련 링크

<http://www.foodsafetynews.com/2018/05/bill-would-ok-interstate-sales-of-state-inspected-meat-poultry/#.VW4xMUjRCIM>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 꿀벌을 위해 살충제 단계적으로 금지 계획

캐나다 보건부는 꿀벌의 생존을 위해 살충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2년 캐나다 해충관리규제기관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라는 살충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함.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꿀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로 EU에서는 이미 5년 전 해당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꿀벌은 특정 환경에서만 해당 물질에 반응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보건부는 살충제 금지 계획을 발표하였음

▷ 관련 링크

<https://kitchener.ctvnews.ca/common-pesticide-should-be-banned-because-of-impact-on-bees-health-canada-1.3954233>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18/05/31/health-canada-recommends-phasing-out-common-pesticide-that-may-harm-bees.html>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 인스턴트 시리얼 내 식품첨가물 스테아르산 첨가 허용

캐나다 보건부는 인스턴트 시리얼 내 소포제로 스테아르산(Stearic Acid)을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 스테아르산은 비표준 제과의 이형제, 츄잉껌의 가소제, 정제 형태로 판매되는 식품의 이형제 및 윤활제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임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permitted-food-additives-stearic-acid-1.html>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8-other-accepted-uses.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호주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 루핀(Lupin)의 알레르기에 대한 라벨 표시 의무화 발표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루핀(Lupin, 콩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라벨에 표기할 것을 발표하였음. 해당 내용은 5월 26일부터 적용됨.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루핀은 단백질 및 섬유질 함량이 높아 최근 호주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땅콩과 유사한 식물군으로서 알레르기 항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관련 링크

<https://foodmag.com.au/mandatory-labelling-lupin-starts-soon/>

호주 : 호주 영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 라벨에 정보 추가 요청

호주 영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구매 결정 시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용 조제 제품의 라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라벨 규정에 대한 의견은 업계 내에서도 분분함.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식품 기준 규정에서 영유아 조제분유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관련 링크

<https://www.foodprocessing.com.au/content/business-solutions/news/manufacturers-call-for-more-information-on-infant-formula-labels-31478545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4C01200>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EU : EU 집행위원회,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라벨링 개정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식품의 원재료에 관한 라벨링 개정을 승인 하였음. 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따라 식품과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필요하며,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관련 링크

https://ec.europa.eu/info/news/commission-adopts-new-rules-labelling-origin-primary-ingredients-food-2018-may-28_en

EU : 영국 농식품 업계, 브렉시트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공동성명 발표

영국 농식품 업계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이에 정부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성명(Food Supply Chain Manifesto)을 발표함. 해당 성명에는 자국 농식품 산업 보호를 위해 브렉시트 이후 식량 자급률을 61% 유지하고, 농식품 분야 시장 1,120억 파운드 규모, 400만 명 고용을 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공동성명에 참여한 자들은 영국 정부가 '식량 생산 보장'이라는 일치된 목표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움직여줄 것을 기대함

▷ 관련 링크

<http://www.thepoultrysite.com/poultrynews/40094/uk-food-and-farming-sector-unites-to-set-brexit-objectives-for-government/>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중국 :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해 고려

세계보건기구(WHO)가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트랜스 지방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중국도 세계 흐름에 따라 트랜스 지방 금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현재 '포장식품영양 표시라벨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에 따르면, 100g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0.3g 미만일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함량 0'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 즉 제품에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는 트랜스 지방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0.3g 미만 첨가했다는 의미임. 만약 트랜스 지방 함량이 0.3g 미만인데 무첨가라고 허위 표기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함

▷ 관련 링크

<http://news.foodmate.net/2018/05/468685.html>

중국 : 인증감독위원회, 'HACCP 인증 보충 요구안 1.0' 발표

중국 인증감독위원회는 HACCP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인증 보충 요구안 1.0(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认证补充要求 1.0)'을 발표함. 추가된 내용은 알레르기 물질 관리와 식품 사기 예방으로 크게 2가지로 하기와 같음

1. 알레르기 물질 관리

- 1.1 기업은 알레르기 물질의 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모든 식품 가공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알레르기 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1.2 기업은 원료, 중간재, 완제품, 식품 첨가물, 가공보조제, 신제품 개발 등에서 도입된 새로운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확인 및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2. 식품 사기 예방

- 2.1 기업은 식품 사기 취약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2.2 기업은 식품 사기에 대한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식품 사기의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관련 링크

<http://www.foodmate.net/law/shipin/193537.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일본 : 농약, 동물약품 시험법 개정

후생 노동성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약품의 성분 시험 방법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개정하기로 함

- 다음에 열거한 시험법을 농약, 동물약품 시험법 별지 2 「제 2 장 일제 고사법」 및 「제 3 장 개별 시험법」에 추가한다.
 - LC / MS에 의한 농약 일제 시험법 Ⅲ (수산물)
 - 이미다클로프리드 시험법 (수산물)
 - 프르티아닐 시험법 (농산물)
 - 헥사디논 시험법 (축산물)
- 농약, 동물약품 시험법 제 3 장 개별 시험법 「스피로 메시펜 시험법(수산물)」을 별지 6으로 대체한다.

▷ 관련 링크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203718.pdf>

일본 : 개정 주세법 시행

일본 정부는 ‘소득세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 주세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 맥주의 정의 개정
 - (1) 맥주 부원료의 범위에 "열매", "고수" 등의 물품이 추가
 - (2) 맥아 비율이 종전의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인하
 - (3) 맥아, 호프 및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만든 이룬 맥주에 홉 또는 새로운 맥주의 부원료로 확대 된 물품을 넣어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도 맥주로 분류 될 수 있도록 맥주 제조법의 요건이 완화
- 과실주의 정의 개정

과실주 오크칩을 담가 그 성분을 침출시킨 것은 종전 단맛 과실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현행으로 과실주로 분류되었음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49/